

改正所得稅法解說



朴 完 奎

- 1) 所得稅法 改正 概要
2. 課稅期間 및 納稅地와 課稅地
- 3) 非課稅所得과 所得稅의 減免
 - (가) 非課稅所得
 - (나) 稅額減免이 되는 所得
- 4) 綜合所得稅課稅標準 計算
 - (가) 利子所得金額
 - (나) 配當所得金額
 - (다) 不動產所得金額
 - (라) 事業所得金額
 - (마) 勤勞所得金額
 - (바) 其他所得金額
 - (사) 綜合所得金額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所得
- 5) 退職所得課稅標準의 計算
- 6) 讓渡所得金額의 計算
 - (가) 讓渡所得金額의 計算
 - (나) 讓渡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 讓渡所得課稅標準計算의 特例
 - (라) 非課稅所得
 - (마) 稅額의 減免
- 7) 山林所得課稅標準의 計算

1. 所得稅法 改正 概要

從前의 우리나라 所得稅는 勤勞所得 事業所得 不動產所得 配當金利子所得 其他所得의 다섯 가지 所得에 對하여 課稅하는 分類所得稅制와 年間 分類課稅所得이 一定額以上者에게 課稅하는 綜合所得稅制를 併行하여 왔으나 이번 改正所得稅法은 個人을 中心으로 염어지는 모든 所得에 對하여 綜合課稅하고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障害者控除와 勤勞所得控除 賞與特別控除 制度를 採括하여 控除金額은 적다고 할지모르나 先進國과 같은 公平한 綜合所得稅制를 確立하는데 注力하였다고 할 것이다. 綜合所得이 되는 所得으로는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其他所得으로 하였고 그以外 綜合所得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所得으로 退職所得 讓渡所得 및 山林所得을 新設 하여 別途의 所得稅를 区分 課稅하도록 하였다.

所 得 의 區 分	改正前	改正后
	I. 分類課稅所得 勤勞所得 事業所得 不動產所得 配當利子所得 其他所得 2. 綜合所得 年間分類課稅所得이 300万朝以上	1. 綜合所得 分離課稅利子 利子所得(所得을除外) 事業所得(分離課稅配當) 不動產所得 勤勞所得(所得을除外) 其他所得 2. 退職所得 3. 譲渡所得 4. 山林所得

2. 課稅期間 및 納稅地와 課稅地

從前의 所得法稅에서는 事業所得과 不動產所得에 對한 課稅期間은 年 2 期로 区分 課稅하였으나 改正所得稅法에서는 1年을 課稅期間으로 하였고, 納稅地에 있어서 도居住者は 事業場所在地(事業場이 없을때에는 住所地 또는 居所地)에서 課稅되었으나 改正된 所得稅法에서는 原則적으로는 住民登錄法에 의하여 登錄된 住民地를 納稅地로 하되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를 納稅地로 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正前	改正后
課稅期間	第1期：1月1日 - 6月 30日 第2期：7月1日 - 12月 31日	1月1日 ~ 12月 31日
居住者의 納稅地	事業場所在地 (事業場) 이없는경우 住所地 또는 (居所地)	住所地(住所地 가 없을 경우 는居所地)

3. 非課稅所得과所得稅의減免

所得稅法이定하는 모든所得에 대하여는課稅하는 것이原則이나政府가經濟政策의내지는社會政策의인·面에서一部의所得에 대하여는課稅權을포기한所得이있는바 이를非課稅所得이라고하며이非課稅所得은綜合所得金額에合算되지아니한다. 그리고課稅所得이지만위와같은政策의고려하에一定한要式節次을取한所得에对于한稅額을免除해주는것을減免이라고한다. 이러한非課稅所得또는減免所得은改正前과比較할때많이달라졌는바달라진內容은다음과같다.

(가) 非課稅所得

所得区分	改正前	改正後
利子所得	(1) 契約期間 1年6月以上의 賯蓄性預金利子 (2) 契約期間 1年6月以上의 合同運用信託의 所得 (3) 總發行社債의 10%以下인 社債利子	(1) 5%分離課稅 (2) 5%分離課稅 (3) 總發行社債의 3%미만에 对하여 5%分離課稅 (4) 國民投資基金에 对한 預託金의 利子와 割引額 (5) 法律이 規定하는 賦金 및 契金의 利子
配當所得	(6) 少額株主가 받는建設利子와,利益配當金	
勤勞所得	(7) 傷痍病者에 对한 年金과慰藉料	(7) 勤勞提供으로 因한 負傷 疾病 死亡에 関聯하여 받는 年金 및 慰藉料 (8) 國民福祉年金法에 依한 노령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과返還一時金 (9) 前職大統領 禮遇에 関한法律 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私立學校 教員年金法에 依하여 退職者 死亡者의 死亡者의 遺族이 받는給与 (10) 勤勞基準에 依한 休業補償金

		業補償金 障害補償金 遺族補償金 葬禮費
	(11) 產業災害 补償保險法에 依한 休業給与	(11) 產業災害補償 保險法에 依한 療養給与 休業給与 障害給与 遺族給与 遺族特別給与 葬禮費 또는 一時給与
	(12) 公務員年金法 및 軍人年金法에 依한 休職 및 職位解除期間의 給与	(12) 公務員年金法 私立學校 教員年金法에 依한 保健給与 休業給与 災害給与 災害補償金과 休業期間의 給与
事業所得		(13) 外國人投資 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과 技術導入契約에 依하여 勤勞를 提供하는 外國人이 받는 海外勤務手當 住宅手當等 海外勤務에 따른 諸手當
讓渡所得	(14) 初版으로 받는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14)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15) 法院의 競賣処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所得 다만 親族其他 特殊關係者에게 設定한 担保權實行의 경우를 除外	(15) 法院의 競賣処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所得 다만 親族其他 特殊關係者에게 設定한 担保權實行의 경우를 除外
		(16) 外國人投資企業을 設立하기 為하여 理物出資 하므로 因하여 發生하는所得

4. 稅額減免이 되는所得

⑥ 外国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과 技術導入契約에 依하여 外國人이 받는 紙與는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日 또는 技術導入契約의 認可日로 부터 5年間의 所得에 對하여는 所得稅를 減免하며 減免稅額計算方式은 아래와 같다.

$$(综合所得金額 - 所得控除) \times 基本税率 \times \frac{\text{減免對象所得金額}}{\text{综合所得金額}} = \text{減免稅額}$$

⑥ 소, 말, 돼지, 양, 사슴, 토끼, 친칠라, 링크, 家禽 또는 꿀벌의 飼育增殖採卵採毛等의 畜産業을 營爲하여 얻은 所得에 對하여는 1976年까지의 所得에 對하여는 全額減免하고 1977年부터 1979년까지의 所得에 對하여는 所得稅의 50%를 減免하며 그 減免稅額의 計算方式은前述한 ⑥의 方式과 같다.

4) 綜合所得稅課稅標準 計算

綜合所得에는前述한 바와 같이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其他所得의 合算된 所得을 말하는 것인 바 위 각所得金額의 合計額에서 所得控除 즉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障害者控除를 하면 綜合所得 課稅標準이 되는 것이다.

이를 算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利子所得收入金額
- ② 配當所得收入金額
- ③ 不動產所得 収入金額 - 必要經費
- ④ 事業所得收入金額 - 必要經費
- ⑤ 勤勞所得收入金額 - (勤勞所得控除 + 賞与特別控除)
- ⑥ 其他所得收入金額 - 必要經費

綜合所得金額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begin{array}{c} \text{— 所得控除} \\ \left\{ \begin{array}{l} \text{基 础 控除} \\ \text{配 偶 者 控除} \\ \text{扶 養 家 族 控除} \\ \text{障 害 者 控除} \end{array} \right. \\ \text{= 綜合所得課稅標準} \end{array}$$

綜合所得課稅標準을 計算하기 為하여서는 위와 같은 算式에 의하게 되나, 各所得金額의 計算方法을 簡単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利子所得金額

利子所得金額은 預金의 利子와 貸與金의 利子 債權 및 證券의 利子等의 年間合計額이 되며 이에는 必要經費가 없음으로 2年間 合計額이 그대로 利子所得金額이 되는 것이다. 이중에는 綜合所得에 合算하지 아니하는 利子所得이 있는 바 이를 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고 해서 5% 또는 10%의 比例税率에 의하여 源泉徵収納付로써 納稅義務를 完結하게 되므로 綜合所得에 合算되는 利子所得은

이러한 分離課稅利子所得 이외의 利子所得을 말한다. 여기서 分離課稅利子所得이란 所得稅法 第 144條 第 1號 (가) 내지 (사)에 規定되어 있는 利子를 말하는 바, 例전대 銀行預金의 利子 合同運用信託의 利益 短期金融會社의 어음의 利子, 社債의 利子, 信用協同組合이나 農業 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의 農漁民의 預金利子 等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 配當所得金額

配當所得金額은 株式配當金을 말하는 것인데 株式會社의 利益配當金이나 合資會社 合名會社의 利益의 分配金法人的 資本轉入으로 因한 無償株式等 擬制配當과 一定留保所得에 課稅되는 紙上配當等이 配當所得이 된다. 이러한 配當所得도 綜合所得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分離課稅配當所得이 있는데 이에는 所得稅法 第 144條 第 2號 (가) 내지 (마)에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서 公開法人 上場法人의 少額株主가 받는 配當 信用協同組合, 農業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의 支給하는 配當 非公開法人의 小額株主로서 우리社 株組合員이 받는 配當 證券投資信託의 利益과 資產再評價積立金을 資本에 轉入할 때에 받는 無償株式등이 있다. 配當所得亦是 必要經費는 없고 配當으로 받는 収入金額의 總額이 곧 配當所得金額이 된다.

(다) 不動產所得金額

不動產所得金額은 그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것이 된다. 不動產所得이 되는 總收入金額은 土地나 建物 登記된 船舶이나 登錄된 自動車 또는 重機, 鑛業權, 租鑛權, 工場財團, 鑛業財團등을 貸與하고 받는 貸貸料收入의 合計額이 되는 것이나, 特히 總收入金額을 推計調查 決定하는 때에는 貸貸收入保證金에 1年定期預金의 利子率을 곱한 金額을 總收入金額으로 보도록 規定하고 있다. 不動產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總收入 金額에서 控除하는 必要經費는 不動產등의 維持費라든가 이에 關係되는 諸經費 人件費等이 포함되는 것이다.

(라) 事業所得金額

事業所得金額亦是 事業所得에 대한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것이 된다.

事業所得이 發生하는 事業의 範圍는 社會通念上의 事業의 範圍보다는 複雑 넓은 意味로 規定되고 있으나, 다만 農業所得은 農地稅가 課稅되기 때문에 事業所得에서 除外되어 所得稅를 賦課하지 않은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事業所得의 範圍에 대하여는 經濟流通構造가 그 流通過程과의 現實化를 期하기 為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이 告示하는 韓國標準產業分類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0種類로 区分하고 있고 建築士는 다음중 ⑤의 업에 해당된다.

- ⑤ 農業, 林業, 獵獵業과 水產業
- ⑥ 鉛業과 採石業
- ⑦ 製造業

- (d) 電氣 가스 및 水道事業
- (e) 建設業
- (f) 都壳業, 小壳業과 飲食, 宿泊業
- (g) 運輸, 保管 및 通信業
- (h) 金融, 保險業, 不動產業과 用役業
- (i) 씨어비스業
- (j) 自由職業

事業所得에 대한 必要經費는 그 事業에 関聯된 모든 費用이 포함되며, 그 以外에도 充當金이라든가 準備金等이 必要經費로 容認되는 경우가 있으며, 寄附金이나 接待費도 一定金額에 대하여는 必要經費로 容認되고 있다.

(마) 勤勞所得金額

勤勞所得은 勤勞를 提供하는 代價로 받는 奉給, 賃金, 手當, 歲費 기타 보너스등 모두가 勤勞所得이 된다.

이러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그 給與의 合計額에서 勤勞所得控除를 하고 또한 그 給與額에 賞與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賞與特別控除를 하고 남은 金額이 勤勞所得金額이 된다. 勤勞所得控除額은 年18만원이 되며, 賞與特別控除額은 12月末 또는 年平均 月定給與額中 많은 給與의 100%에相當하는 金額이며, 그 金額이 1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2만원이 되고 賞與自體가 12만원 보다 적고 또한 月定額 給與의 100%보다 적은 때에는 그 賞與金이 賞與特別控除額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勤勞所得控除額 年 18만원은 納稅者 1人에 대한 年控除額이므로 勤務處가 그 以上 있을 경우라도 모든 給與를 合하여 年18만원을 控除하며, 그 勤勞所得이 年18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未滿의 金額이 勤勞所得控除額이 된다. 따라서 主된 勤務處의 勤勞所得이 18만원 미만이고 徒된 勤務地의 勤勞所得이 있을 경우에는 徒된 勤務地의 所得에서도 勤勞所得控除가 되며 또한 勤勞所得控除는 그 勤勞月數와는 相關없이 年間 18만원의 控除를 받게 된다. 다만 日傭勤勞者인 경우에는 勤務日 1日當3,700원의 勤勞所得控除를 하도록 规定하고 있으므로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金額은 日當 勤勞所得에서 3,700원의 勤勞所得控除를 하고 남은 金額이 되며, 또한 이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金額은 綜合所得에 合算하지 아니한다.

(바) 其他所得金額

其他所得은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및 山林所得以外의 所得으로서 賞金 補償金이라든가 福券, 景品券의 當籤金 懸賞金, 著作者 이외의 著者가 받는 著作權使用料 嘗業權, 工業所得權, 기타 一定權利의 使用料, 非當業者의 物品이나 場所의 一時貸與料 등의 所得이 되며,

이러한 所得이 되는 總收入金額에서 그 必要經費를 控除하는 金額이 其他所得金額이 된다.

(사) 綜合所得金額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所得

위와 같은 여섯 가지의 所得金額에 合計額이 綜合所得金額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綜合所得金額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것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非課稅所得

(나)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

(다) 分離課稅配當所得

(마) 紙上配當으로 課稅된 所得을 그 후 實地配當을 받았을 때의 그 配當所得

(oh) 退職所得 讓渡所得과 山林所得課稅標準의 計算

5) 退職所得課稅標準의 計算

退職所得은 退職金에서 그 100分의 50에相當하는 金額을 退職所得特別控除하고 이에서 다시 18萬원의 退職所得控除를 하여 計算하는 것이며, 綜合所得金額에서 控除하지 못한 所得控除額이 있는 경우는 退職所得課稅標準이 되는 것이나, 所得控除할 金額이 없을 때에는 退職所得金額이 곧 課稅標準이 된다.

그런데 教育公務員法에 의하여 支給받는 退職功勞手當은 退職所得으로 보고 그 支給金額의 100분의 75를 退職所得特別控除額으로서 控除하여 退職所得金額을 計算하는 것이나, 教育公務員法에 의하여 支給하는 退職功勞手當 이외의 一般 退職功勞手當이나 退職功勞金 等은 退職所得으로 보지 아니하고 勤勞所得으로 課稅되는 것이다.

6)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計算

(1) 讓渡所得課稅標準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text{讓渡差益} = \text{讓渡價額} - \text{必要經費}$$

$$\text{讓渡所得金額} = \text{讓渡差益} - \text{讓渡所得特別控除}$$

$$\text{讓渡所得課稅標準} = \text{讓渡所得金額} - \text{所得控除}$$

여기서 所得控除는 基礎控除, 配偶者 控除 扶養家族 控除 및 障害者 控除를 말하는 것이며 當該年度의 綜合所得金額과 退職所得金額의 合計額이 所得控除에 未達하는 경우에 限하여 그 控除不足額을 謂渡所得金額에서 控除할 수 있는 것이다.

(가) 謂渡所得金額의 計算

$$\text{讓渡所得金額} = \text{讓渡價額} - \text{必要經費} - \text{讓渡所得特別控除}$$

(1) 謂渡價額(實地去來價額) 不分明한 때에는 謂渡時の 時價標準額)

資產의 謂渡로 因하여 發生한 總收入金額

(2) 必要經費

(ㄱ) 取得價額

取得價額 = 取得에 所要된 實去來價額 + 設備費와 改良費 + 資本的支出額

(@) 取得에 所要된 實地去來價額 : 取得原價와 그 附帶費用

① 實地去來額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取得當時의 時價標準額

② 資產再評價法에 의하여 再評價한 資產에 있어서는 그 再評價額

⑤ 設備費와 改良費 : 資產取得後의

① 用途變更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② 改良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③ 利益便宣를 위하여 支出한 費用

⑥ 資本的 支出額 : 資產取得後의

① 資產의 耐用年數를 延長시키기 위하여 支出한 費用

② 資產의 價值을 現實的으로 增加시키는 修繕費

③ 資產에 대한 所有權을 確保하기 위하여 直接 所要된 訴訟費用

④ 1967년 12月 31日 이전에 取得한 資產의 取得價額은 1968年 1月 1日 現在의 時價(時價를 알수 없을 때에는 1968年 1月 1日 現在의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다만, 1967년 12月 31일 이전에 取得한 資產의 實地去來된 去來價額에 그 取得日로부터 1967년 12月 31일 까지의 保有期間에 의한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合算한 價額이 1968年 1月 1일 現在의 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金額을 取得價額으로 한다.

(L) 讓渡費

資產을 讓渡하기 위하여 直接 支出한 費用

(M) 讓渡所得特別控除

讓渡所得特別控除 = 取得價額 × 率 × 謂渡資產의 保有期間의 年數

① 率 : 原則적으로 $\frac{10}{100}$ 다만, 都賣物價上昇率이 $\frac{10}{100}$ 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都賣物價上昇率에 의하되 $\frac{20}{100}$ 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 謂渡資產의 保有期間 : 取得日로부터 謂渡日 까지의 期間을 年으로 計算하되 年末滿은 月數에 따라 計算하고 月末滿의 日數는 1月로 한다.

③ 資產의 謂渡 또는 取得의 時期는 當該契約을 締結하고 그 契約金 이외에 代價의 一部를 領收한 날 또는 領收할 날로 한다.

다만 代金의 一部를 領收하였으나 賣買契約의 目的物이 完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目的物이 完成된 날로 한다.

④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의 경우 謂渡 또는 取得의 時期는 그 契約을 締結한 날로 한다.

⑤ 契約金 이외의 代價의 一部를 領收할 날은 契約書등에 定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明示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謂渡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30日이 되는 날을 謂渡 또는 取得의 時期로 한다.

⑥ 謂渡資產中 土地와 建物로서 1967年 12月 31일 이전에 取得한 것은 1968年 1月 1일을 그 資產의 取得時期로 보도록 하였다.

(N) 讓渡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債務者가 債務의 辨濟를 擔保하기 위하여 資產을 讓渡한 경우에 다음 要件을 갖춘 契約書의 寫本을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첨부한 때에는 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① 債務의 辨濟를 擔保하기 위하여 讓渡한다는 意思表示가 있을 것

② 當該資產의 債務者가 原本대로 使用 収益한다는 意思表示가 있을 것.

③ 元金 利率 辨濟期限 辨濟方法등에 관한 約定이 있을 것.

이 경우에도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辨濟에 充當한 때에는 그때에 讓渡한 것으로 본다.

(다) 讓渡所得課稅標準計算의 特例

① 土地와 建物을 함께 取得하거나 让渡한 경우에 土地價額과 建物價額의 区分이 不分明한 때에는 取得 또는 让渡 當時의 時價標準額에 의하여 計算한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 한다.

② 林木과 林地를 함께 取得하거나 让渡한 경우에 林木價額과 林地價額을 区分할 수 없을 때에는 林地에 대한 時價標準額에 의하여 取得價額과 让渡價額을 計算하고 그 残額을 林木에 대한 取得價額 또는 让渡價額으로 본다.

(라) 非課稅所得

다음에 當하는 讓渡所得에 對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①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變更되거나 替費地로充當되므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② 國稅徵收法에 의한 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③ 破産宣告에 의한 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④ 謂渡할 때 까지 8年이상 繼續하여 自己가 耕作한 土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象(非課稅, 減免과 小額不徵收의 情況을 포함한다)이 되는 土地의 謂渡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⑤ 다음 各號 1에 해당하는 農地를 交換 또는 分合하는 경우에 交換 또는 分合하는 雙方 土地價格의 差額은 價額이 큰 便이 4分의 1 以下이어야 한다.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事業으로 因하여 交換 또는 分合하는 農地.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와 交換 또는 分合하는 農地.

③ 耕作上 必要에 의하여 交換하는 農地

④ 農村近代化促進法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또는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交換 또는 分合하는 農地.

⑤ 法院의 決定에 의한 競賣處分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다만 當該資產의 所有者가 그와 親族 기타 特殊關係者, 즉, 國稅基本法 施行令 第20條 1號 내지 8號에 當하는者에게 設定한 擔保權의 實行으로 因하여 競賣되는 경우를 除外 한다.

(g)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한 収用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h)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을 設立하기 위하여 現物로 出資하므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① 1世帶 1住宅의 範圍에 屬하는 아래 各號

① 1世帶 1住宅이라 함은 1世帶가 國내에 1個의 住宅을 所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 1號에서 “世帶”라 함은 讓渡者 및 讓受者와 同一한 住所 또는 居所에서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을 말한다.

③ 住宅의 一部에 店舗等 다른 目的의 建物이 設置되어 있거나 同一番地上에 住宅과 다른 目的의 建物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全部를 住宅으로 본다. 다음 住宅의 面積이 住宅 이외의 面積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住宅部分이외의 建物은 住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第3號但書의 경우에 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는 全體土地面積에 住宅部分의 面積이 建物面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乘하여 計算한다.

(마) 稅額의 減免

다음에 揭記하는 讓渡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減免申請이 있는 경우에 限하여 減免을 받는다.

(a) 다음 資產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直接 讓渡하므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①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한 公益事業에 必要한 土地와 이에 定着된 施設物로서 同法에 依한 事業認定告示後 讓渡하는 것.

(L) 國防上 保安을 要하는 堅急한 軍事施設을 目的으로 國家에 讓渡하는 土地와 이에 定着된 施設物로서 國防長官이 認定하는 것.

(b) 2年이상 繼續하여 稼動한 工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土地와 建物을 讓渡하므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이 경우에 工場用에 直接 利用되는 土地와 建物에 대하여는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⑦ 讓渡한 土地面積 이상의 工場敷地를 確保하고 移轉前의 工場에 直接 使用되던 機械裝置등의 施設에相當하는 價值의 工場을 讓渡前에 施工하거나 讓渡日로 부터 1年内에 施工한 경우.

다만, 讓渡前에 工場을 施工한 경우에는 그 施工日로부터 2年内에 竣工하고 竣工日로 부터 1年内의 移轉前의 工場用敷地와 建物을 讓渡한 때에 限하여 減免받을 수 있다.

(L) · (7)의 경우에 建設施工報告書 또는 建設竣工 報告書에 當該施設을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施工日로부터 또는 竣工日로 부터 15日内에 住所地管轄 稅務署長에게 提出한 경우.

(E) 讓渡한 날이 속하는 年度의 直前年度와 直前前年度에 있어서 當該工場의 運營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

所得稅가 賦課되거나 免除된 경우.

(c) 5年이상 繼續하여 經營한 牧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土地와 建物을 讓渡하므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 이 경우에도 稅法에 規定한 牧場의 施設基準 및 免稅範圍飼育頭數 이상의 家畜을 飼育하는 牧場에 대하여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7) 稅法에 規定한 土地面積 이상의 新牧場敷地를 確保하고 舊牧場을 讓渡한 날로부터 1年内에 新牧場의 事業을 開始한 경우. 다만, 舊牧場의 讓渡前에 新牧場의 事業을 開始한 경우에는 開始日로부터 2年内에 舊牧場을 讓渡하고 稅法에 規定한 土地面積 이상의 新牧場敷地를 確保한 때에 限하여 減免을 받을 수 있다.

(L) 讓渡한 날이 屬하는 年度까지 繼續하여 5年間 舊牧場의 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對하여 所得稅가 賦課되거나 免除된 경우.

(d) 讓渡所得에 對한 所得稅를 減免받은 者가 다음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減免받은 所得稅를 追徵받게 된다.

(7) 正當한 事由없이 1年内에 工場施設을 施工하지 아니하거나 施工日로부터 2年内에 竣工하지 아니한 때

(L) · (C)의 (7) 및 (L)의 要件을 갖추지 아니한 때

7) 山林所得課稅標準의 計算

山林所得은 自己가 5年以上 造林한 山林을 讓渡하거나 伐採하므로 因하여 얻는 所得이며 그 總收入金額에서 山林의 取得費 기타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에서 다시 50萬원의 山林所得特別控除額을 다시 控除한 金額이 山林所得金額이 된다.

이 경우亦是 控除할 所得控除額이 있으면 그 所得金額에서 所得控除한 나머지가 課稅標準이 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山林所得金額 自体가 課稅標準이 된다.

青松會計法人 代表 公認會計士